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되,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 사유로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를 “제2호부터 제15호,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의”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품 수급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 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10조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로 하고, 제1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서 발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예정 확인서(제1항제4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서 발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예정 확인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3.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

-----.

1. -----제1항제2호 및 제4호-----

2.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서 발행한 제작결합시정조치 이행 예정 확인서 (제1항제4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